

의안번호	2204666
의 퇴 인	김희정 의원
회 답 일	2024. 10. 22.
추 계 번호	24C4298

경제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634억 2,000만원(연평균 1,726억 8,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70	-	-	-	-	70	1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11조)	-	300	-	-	300	600	120
진단검사비 지원(안 제18조)	4,235	3,900	3,560	3,278	3,041	18,014	3,603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안 제20조제2항)	127,908	133,536	139,412	145,546	151,950	698,351	139,670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지원(안 제25조)	3,384	3,384	3,384	3,384	3,384	16,921	3,384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안 제26조)	11,430	11,652	11,878	12,108	12,343	59,411	11,882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33조)	13,156	13,558	13,974	14,402	14,832	69,922	13,984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운영(안 제36조)	26.2	26.2	26.2	26.2	26.2	131	26.2
추가재정소요	160,209	166,356	172,234	178,744	185,876	863,420	172,683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1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3조(의사소통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경계선지능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 등을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사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담당 직원이 경계선지능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5조(지원신청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8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9조(자녀양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0조(교육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1조(자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거나 경제·법률·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2조(고용 및 직업 훈련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3조(평생교육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교육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4조(의료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련, 심리상담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5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6조(한국경계선 지능인개발원 설립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함 ※ (제29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의무규정 (제29조: 재량규정)
14	안 제33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제1항)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2항)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경계선지능인의 수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에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35조(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운영)	(제1항)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제2항)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4항)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제5항)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제5항) 재량규정
16	안 제34조(경계선지능인 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36조(경계선지능인 교육운영위원회)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	의무규정
18	안 제37조(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11조(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3	안 제13조(의사소통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기존 예산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4	안 제15조(지원신청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8조(조기진단 및 개입)	○	○ 대구·인천·전북교육청의 진단검사비 지원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6	안 제19조(자녀양육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20조(교육 지원)	△	○ (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2항·제3항)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8	안 제21조(자립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9	안 제22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	
10	안 제23조(평생교육 지원)	×	
11	안 제24조(의료 지원)	×	
12	안 제25조(경제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	○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3	안 제26조(한국경제선지능인 개발원 설립 등)	○	○ 보건복지부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4	안 제33조(경제선지능인지원 센터)	○	○ 서울특별시의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5	안 제34조(경제선지능인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6	안 제35조(지역사회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	×	
17	안 제36조(경제선지능인교육 운영위원회)	○	○ 교육부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의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8	안 제37조(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3조·제15조·제19조·제21조~제24조·제34조·제35조·제37조 등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13조)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작성·배포할 정책정보의 양과 작성 방법, 지침 개발·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
 - (안 제1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안 제19조~제25조의 지원서비스 신청을 한 사람에게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마련할 판정체계의 형태와 지원신청자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안 제19조~제24조)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 및 직업훈련, 평생교육, 의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8억 3,800만원, 국고보조율 서울 50%, 그 외 70%)
 - (안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21조는 해당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축할 시스템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35조) 시·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35조제1항은 통합지원체계의 업무와 기관·단체의 범위 등 통합지원체계의 운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안 제35조제6항은 다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전담공무원, 전문인력의 배치 등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축될 통합지원체계의 구조와 인력 배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3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와 지원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참고로, 경계선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 기준 지능지수(IQ)가 70 초과 85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IQ의 정규분포에 따라 인구의 13.59%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 제정안이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자 수를 일괄적으로 인구의 13.59%로 설정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므로, 기존 유사사업의 지원 규모 등을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신규 사업의 대상자 수를 가정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기본경비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의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
 -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제6차 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하여 2021년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연구용역비로 약 7천만원 소요)
 - 본 추계서는 교육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첫 해인 2026에만 7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70	-	-	-	-	70	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실태조사 실시(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2024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실시 중에 있고, 소요 예산은 3억원
 - 2024년에 제정안이 명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3년 후인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 기간 연구용역 단가(3억원)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억원(연평균 1억 2천만원)으로 추계

[표 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	300	-	-	300	600	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진단검사비 지원(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2024년 예산서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추계서는 매년 시·도별 6~11세 인구¹⁾의 1%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에 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참고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4년 지원인원(각각 300명, 500명)은 각각 지역별 만 6~11세 인구 대비 0.3% 수준이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 지원인원(40명)은 해당 지역 만 6~11세 인구 대비 0.05% 수준
 - 지원 인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12. 공표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 지원 단가는 1인당 20만원이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
 -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지원 대상과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²⁾

□ 추계결과,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0억 1,400만원(연평균 36억 300만원)으로 추계

[표 4]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A)	4,407	4,072	3,732	3,450	3,213	18,874	3,775
대상자 수	22,035	20,360	18,659	17,250	16,067	-	-
지원 단가	0.20	0.20	0.20	0.20	0.20	-	-
기존 사업의 총 재정소요(B)	172	172	172	172	172	860	172
추가재정소요(A - B)	4,235	3,900	3,560	3,278	3,041	18,014	3,6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제정안은 진단검사의 대상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인구의 1%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6~11세 인구를 활용
- 2) 본 추계서는 시·도교육청 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인천·전북 외의 지역에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라.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안 제20조제2항)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가정³⁾

－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평균 국고보조율 67%)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음

○ (대상자 수)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서상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1만명)만큼 매년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인구의 약 13.59%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6~18세 장래추계인구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경계선지능학생 수를 산출해 보면 추계기간의 연도별 경계선지능학생 수는 62~76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나, 현행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가 1만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사업 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사업 대상자 규모를 기존 사업과 동일한 1만명으로 가정(추계기간 대상자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

○ (지원 단가 및 시간 등) 2024년 예산서상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16,150원)와 지원 시간(66시간), 지원 개월 수(12개월)를 기준으로 추계⁴⁾

－ 추계기간 지원 단가는 2022~2024년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4.4%)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2023~2024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지원 개월 수가 각각 66시간과 12개월로 유지되었으므로, 추계기간 동 수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 강원도의 경우 시·군별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어 경계선지능인, 난독증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방과후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와 별도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4)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 편성 시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산액에 집행계수 65%를 추가 적용하여 최종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집행계수를 고려하지 않음

- 추계결과,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983억 5,100만원(연평균 1,396억 7,000만원)으로 추계

[표 5] 경계선지능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안 제14조제2항)	127,908	133,536	139,412	145,546	151,950	698,351	139,6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경계선지능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안 제25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에게 보호·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교육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가정

-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교육 운영비 및 양육기술훈련비를 지원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교육사업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을 제공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교육 사업비 지원(국고보조율 50%)과 부모상담지원 사업(평균 국고보조율 67%)은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음

- (교육) 안 제33조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1개소)에 교육 운영비를,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17개소)에 교육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교육 운영비 및 교육 사업비 단가) 2024년 예산서상의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2023~2024년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된 부모교육지원 예산 단가는 각각 2억원과 6억 6천만원으로 유지됨

- (양육기술훈련) 안 제20조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1개소)에 양육기술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2024년 예산서상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양육기술훈련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를 적용하되, 지원 기간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2023~2024년 각 연도에 양육기술훈련 목적으로 1,600명을 대상자로 가정하여 1인당 평균 8만 7천원 단가를 적용한 예산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
- (상담) 2024년도 예산서상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대상자 수(1천명)를 참고하여 대상자 수를 1천명으로 가정하고, 2024년도 예산서상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단가(16만원) 및 횟수(12회=12개월)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추계기간 대상자 수와 단가 및 횟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참고로, 2023~2024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 및 횟수가 유지됨

□ 추계결과,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에게 정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69억 2,100만원(연평균 33억 8,400만원)으로 추계

[표 6] 경계선지능인 보호자 정보, 교육 및 상담 제공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교육 지원(A)	1,325	1,325	1,325	1,325	1,325	6,625	1,325
중앙센터 교육 운영비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지역센터 교육 사업비	1,125	1,125	1,125	1,125	1,125	5,624	1,125
양육기술훈련 지원(B)	139	139	139	139	139	696	139
대상자 수(명)	1,600	1,600	1,600	1,600	1,600	—	—
지원 단가	0.087	0.087	0.087	0.087	0.087	—	—
상담 지원(C)	1,920	1,920	1,920	1,920	1,920	9,600	1,920
대상자 수(명)	1,000	1,000	1,000	1,000	1,000	—	—
지원 단가	0.16	0.16	0.16	0.16	0.16	—	—
지원 횟수(회)	12	12	12	12	12	—	—
추가재정소요(A + B + C)	3,384	3,384	3,384	3,384	3,384	16,921	3,3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 설립(안 제26조)

- 제정안에 따라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의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여 인건비, 사업비,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인건비) 인건비 지원 대상자 수는 2024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지원 대상자 수(100명)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인건비 지원 단가는 2024년도 해당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지원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치⁵⁾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비·운영경비) 2024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및 운영경비 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추계결과,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94억 1,100만원(연평균 118억 8,200만원)으로 추계

[표 8]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업비	3,882	3,960	4,039	4,120	4,202	20,204	4,041
인건비	6,892	7,023	7,156	7,292	7,430	35,793	7,159
운영경비	656	669	683	696	710	3,414	683
추가재정소요 합계	11,430	11,652	11,878	12,108	12,343	59,411	11,8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추정치(2024.10.11.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33조)

- 제정안에 따라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의 중앙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례와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중앙·지역센터 수) 중앙센터는 1개소, 지역센터는 16개 광역 시·도에 지역당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센터의 경우 서울시는 현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에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⁶⁾
 - (중앙센터 지원 단가) 보건복지부의 중앙발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예산을 참고하여, 2024년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2022~2024년 예산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산출)

[표 3]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469	478	490	2.1
운영비	410	410	410	0.0

주: 2024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최중증 중사자 교육 운영지원비(400백만원)’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역센터 지원 단가) 서울시의 2024년 예산서상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예산(20억 8,100만원⁷⁾)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2024년 지역별 경계선지능인 수 추정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지원 단가를 산출
 - 지역별 인구 대비 경계선지능인 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실제 경계선지능인의 지역별 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비율 추정치인 13.59%를 일괄 적용
 - 다만, 시설임차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지역별 임대 여부 및 시설 위치,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유희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6) 강원도의 경우 시·군별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어 경계선지능인, 난독증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방과후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강원도에도 별도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정

7) 시설임차료 제외

-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지원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⁸⁾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표 5]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운영비 단가 추정(2024년)

(단위: 천명, %, 백만원)

구 분	경제선지능인 수 추정치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운영비 추정	
		서울특별시 기준 분포	
서울특별시	1,277	100.0	(기준금액) 2,081 ¹⁾
부산광역시	444	34.8	723
대구광역시	320	25.1	521
인천광역시	414	32.5	676
광주광역시	198	15.5	322
대전광역시	200	15.7	326
울산광역시	150	11.7	244
세종특별자치시	53	4.1	86
경기도	1,884	147.6	3,071
강원특별자치도	206	16.2	336
충청북도	221	17.3	361
충청남도	302	23.7	493
전북특별자치도	239	18.7	390
전라남도	239	18.7	389
경상북도	353	27.6	575
경상남도	442	34.6	720
제주특별자치도	92	7.2	149

주: 1) 시설임차료 제외

자료: 서울특별시 2024년도 예산서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중앙·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99억 2,200만원(연평균 139억 8,400만원)으로 추계

[표 6] 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중앙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922	933	945	956	969	4,725	945
지역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12,234	12,625	13,029	13,446	13,863	65,197	13,039
추가재정소요 합계	13,156	13,558	13,974	14,402	14,832	69,922	13,9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2024.3.29.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4	3.2	3.2	3.2	3.2	3.1

아.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운영(안 제36조)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회를 각각 두어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원 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원 구성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 등을 참고하여 추계
 - －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비 추계) 해당 위원회에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⁹⁾씩 지급하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5명이고, 그중 6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한 해 1회의 회의를 개최
 -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비 추계) 시·도별 해당 위원회에 각각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10만원¹⁰⁾씩 지급하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현재 교육감 소속의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지역별로 8~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2~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됨
 - － 교육감 소속의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청 본청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9)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준용

- 추계결과,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억 3,100만원(연평균 2,620만원)으로 추계

[표 7]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명, 회, 개소)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중앙위원회 운영 비용(A)	2.4	2.4	2.4	2.4	2.4	12.0	2.4
회의수당 단가	0.2	0.2	0.2	0.2	0.2	—	—
인원 수	6	6	6	6	6	—	—
회의개최 횟수(C)	2	2	2	2	2	—	—
시·도위원회 운영 비용(B)	23.8	23.8	23.8	23.8	23.8	119.0	23.8
회의수당 단가	0.1	0.1	0.1	0.1	0.1	—	—
인원 수	7	7	7	7	7	—	—
회의개최 횟수	2	2	2	2	2	—	—
시·도 수	17	17	17	17	17	—	—
추가재정소요(A + B)	26.2	26.2	26.2	26.2	26.2	131.0	2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